
농업기술센터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농정과



(쌀소득등보전직불제) (P - 11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19년 12월
- 사업규모 : 3,172ha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4,085,000	3,929,000	4,082,200			-153,200	-156,000	
국 비	4,085,000	3,929,000	4,082,200			-153,200	-156,000	
도 비							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직불금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으로 예산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	제 4조 1항
근거내용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조금(이하 "농업소득보전직접 지불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type="checkbox"/>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
-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쌀소득등 보전직불제	301-11 기타보상금	· 쌀고정직접지불금: 1,238,650원*3,172ha ≙ 3,929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 : 추가조사 및 직불금 지급
- 2019.12 : 사업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· 농 가 수 : 4,743 · 지급 면적 : 40,229,878㎡ · 지급 금액 : 4,144,245,400원	
2018년	· 농 가 수 : 4,761 · 지급 면적 : 39,556,329㎡ · 지급 금액 : 4,039,016,000원	
2019년	· 농 가 수 : 4,734 · 지급 면적 : 31,729,330㎡ · 지급 금액 : 3,924,849,210원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7년	4,126,700	4,114,256	-	12,444	
2018년	4,085,000	4,039,017	-	45,983	
2019년	4,082,200	3,924,849	-	157,351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장영신	담당자	행정8급 김용구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논 타작물 재배 지원) (P - 11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2월 ~ 2019년 12월
- 사업규모 : 81ha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999,600	292,100	1,227,400	-91,800	-843,500	-707,500	
국 비	799,680	233,680	981,920	-73,440	-674,800	-566,000	
도 비	59,976	17,526	73,644	-5,508	-50,610	-42,450	
시 비	139,944	40,894	171,836	-12,852	-118,090	-99,05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경기도에서 사업량 과다 산정으로 내시된 예산액에서 사업량 측정에 따른 예산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	제 7조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,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,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·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지원을 통해 쌀 과잉생산 방지, 쌀 값 하락에 대응기 위해 지원 필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논 타작물 재배지원	301-11 기타보상금	· 논 타작물 재배 지원 : 3,606,170원*81ha ≙ 292,1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 : 신청접수 및 이행점검
- 2019.12 : 타작물 재배 지원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	
2018년	· 농 가 수 : 19농가 · 지급 면적 : 11ha · 지급 금액 : 38,326천원	
2019년	· 12월 집행예정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
2017년	-	-	-	-	
2018년	999,600	38,326	-	961,274	
2019년	1,135,600	-	-	1,135,60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장영신	담당자	행정8급 김용구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밭농업직불제) (P - 119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19년 12월
- 사업규모 : 586ha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313,320	329,000	386,000			-57,000	15,680	
국 비	313,320	329,000	386,000			-57,000	15,680	
도 비								
시 비							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직불금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에 따른 실제 사업비 반영으로 예산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	제 4조1항
근거내용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」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과 범위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소득보조금(이하 "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소득이 많지 않고 생산이 감소되는 품목의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
- 밭농업직불금 지원으로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밭농업직불제	301-11 기타보상금	·밭농업직불제 : 561,430원*586ha = 329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 : 추가조사 및 직불금 지급
- 2019.12 : 사업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· 농 가 수 : 2,020호 · 지원 면적 : 648ha · 지원 금액 : 292,992천원	
2018년	· 농 가 수 : 1,951호 · 지원 면적 : 621ha · 지원 금액 : 311,142천원	
2019년	· 농 가 수 : 1,876호 · 지원 면적 : 586ha · 지원 금액 : 323,092천원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7년	320,000	292,992	-	27,008	
2018년	313,320	311,142	-	2,178	
2019년	386,000	323,092	-	62,908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장영신	담당자	행정8급 김용구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) (P - 12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19년 12월
- 사업규모 : 73.3ha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경작 유도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40,700	47,470	66,807		-26,807	7,470	6,770	
국 비								
도 비	40,700	14,241	20,043		-8,043	2,241	-26,459	
시 비		33,229	46,764		-18,764	5,229	33,229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사업신청량 증가(40.9ha → 73.3ha) 32.4ha로 증액내시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	제 16조 1항
근거내용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,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(이하 "친환경농업보조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따른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 지원을 통해 현대농법의 부작용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, 환경보전적 가치 증대, 농산물의 안전성 등 공익적 기능 강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	301-11 기타보상금	·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 : 647,610원×73.3ha ≙ 47,47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1 ~ 2019.02 : 사업설명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·홍보
- 2019.03 ~ 2019.04 : 친환경 재배장려금 신청
- 2019.05 ~ 2019.11 : 이행점검
- 2019.12 : 보조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· 농 가 수 : 85농가 · 지급 면적 : 91ha · 지급 금액 : 13,963천원	
2018년	· 농 가 수 : 73농가 · 지급 면적 : 86ha · 지급 금액 : 34,488천원	
2019년	· 12월 집행예정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7년	20,291	13,963	-	6,328	
2018년	40,700	34,488	-	6,212	
2019년	40,000	-	-	40,000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농업지원팀장 장영신	담당자	행정8급 김용구	전화	2811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) (P - 12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2월
- 사업규모 : 11,716kg/7농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국내 아로니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재고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지원함으로써 아로니아 가격안정 추진 및 농가 피해 최소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	19,784				19,784	
국 비		9,892				9,892	기금
도 비							
시 비		9,892				9,892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국내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한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에 따른 예산반영(신규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	제9조 제4항
근거내용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·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국내 아로니아 과잉생산 등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하여 아로니아 재고물량에 대한 시장격리 지원으로 아로니아 가격안정 및 농가 피해 최소화
- 냉동·건조 저장된 2018년산 아로니아 재고물량에 대한 원물수매와 폐기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지원

(농식품 수출장려(물류비) 지원) (P - 12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88.7톤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수출 농수축산물 생산단체·업체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수출능가 및 업체의 수출의욕 고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91,000	71,000	66,000			5,000	-20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18,200	14,200	13,200			1,000	-17,200	
시 비	72,800	56,800	52,800			4,000	-20,0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여름철 태풍피해로 인한 수출량이 감소되는 등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예산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 조례	제59조 제7조 제1항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, 무역정보의 수집·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① 도지사는 경기도 농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·운영지원 2. 농수산물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. 농수산물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4. 그 밖에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필요성

- 생산자 단체 및 수출업체의 생산비 및 물류비 지원으로 안정된 수출기반 육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

○ 사업내용

- 수출 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업체에 수출 물류비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농식품 수출장려 (물류비) 지원	402-02 민간자본사업보조 (이전재원)	· 수출물류비 : 4,000원*88,750kg*20% = 71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 01 ~ 06 : 상반기 농산물 수출 및 사업비 정산
- 2019. 07 ~ 12 : 하반기 농산물 수출 및 사업비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지원단체 : 2개소 (김포파주인삼농협, 김포배수출작목회) - 지원내역 : 배 (182톤), 인삼 (11톤)	
2018년	- 지원단체 : 2개소 (김포파주인삼농협, 김포배수출작목회) - 지원내역 : 배 (289톤), 인삼 (17톤)	
2019년	- 지원단체 : 2개소 (김포파주인삼농협, 김포배수출작목회) - 지원내역 : 배 (29톤), 인삼 (7톤)	상반기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90,000	68,373	-	21,127	사드 수출취소
2018년	91,000	91,000	-	-	
2019년	66,000	41,063	-	24,937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유통팀장 최근식	담당자	농업9급 곽지선	전화	2815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) (P - 12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관내 초·중·고·특수학교(54,000명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우수농산물 등의 공급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관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1,947,458	2,390,000	1,892,000		458,000	40,000	442,542	
국 비								
도 비	973,729	1,195,000	946,000		229,000	20,000	221,271	
시 비	973,729	1,195,000	946,000		229,000	20,000	221,271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원예산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경기도 친환경급식 등 지원 조례	제5조
	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	제3조, 제4조
근거내용	<p>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(이하 "도"라 한다)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(이하 "학교 등"으로 한다)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.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<p><제3조></p> <p>①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제4조></p> <p>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학교급식법」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<개정 2016.10.31> 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필요성
 - 우수농산물(친환경·G마크)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고품질의 학교급식 실현
 -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학생수 증가에 대한 현실 반영 및 기대부응
- 사업내용
 -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재료 공급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 지원	301-12 기타보상금	· 급식지원 : 221원*54,000명*200일 = 2,39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-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 - 2019. 01 ~ 12 :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추진계획 수립 및 월별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친환경 농산물 42개소/777톤 (농산물 665톤, 쌀 112톤)	
2018년	- 친환경 농산물 60개소/1016톤 (농산물 611톤, 쌀 405톤)	
2019년	- 친환경 농산물 78개소/1196톤 (농산물 737톤, 쌀 459톤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 (예상액)	집행잔액	비고
2017년	1,774,048	1,560,668	180,000	33,380	
2018년	2,127,458	1,955,319	159,499	12,640	
2019년	2,509,499	2,249,499	260,000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유통팀장 최근식	담당자	농업8급 정현욱	전화	2814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공유재산 유지보수) (P - 12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1 ~ 12월
- 위 치 : 월곶면 애기봉로 62외 1개소
- 사업규모 : 2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수출배 선별장 및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유지 보수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6,000				6,000	6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	6,000				6,000	6,0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공유재산(배선별장 및 농산물저온저장고)의 태풍 링링 피해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	제9조
근거내용	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○ 필요성

- 태풍 링링으로 수출배 공동 선별장 휨스 및 출입문 파손에 따른 시설 보수 필요
-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의 시설노후에 따른 냉각장치(모터 및 히터) 고장으로 시설 보수 필요

○ 사업내용

- 수출배 공동선별장 휨스 및 출입문 수리
-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냉각장치(모터 및 히터) 교체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비고
공유재산 유지보수	시설비 401-01	· 수출배 선별장 휨스 수리 : 1,400,000원*1식 = 1,400 · 공동 저온저장시설 수리 : 4,600,000원*1식 = 4,600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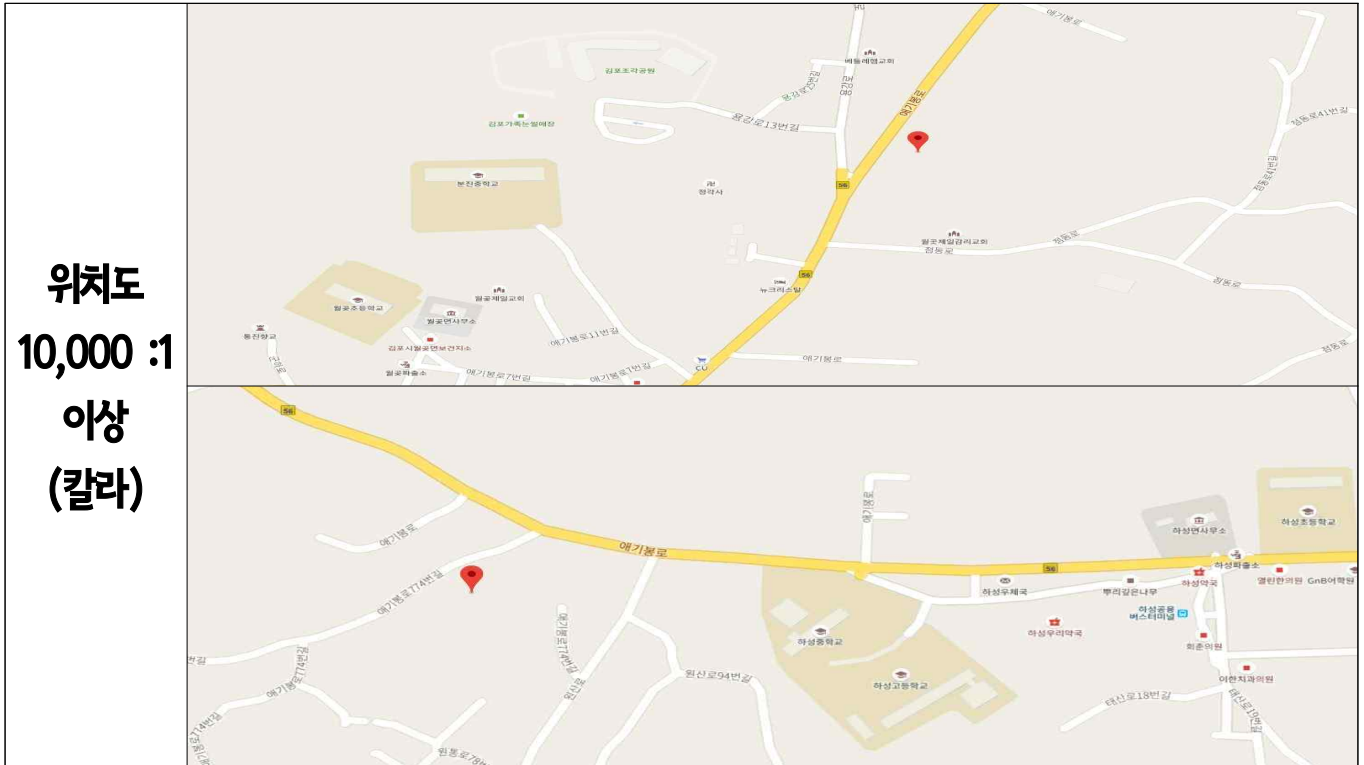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-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시설보수공사 1건	
2018년	- 해당없음	
2019년	- 해당없음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6,500	5,850	-	650	
2018년	-	-	-	-	
2019년	-	-	-	-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위치도 및 현장사진

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정과	유통팀장 최근식	담당자	농업9급 곽지선	전화	2815
-----	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축수산과



(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) (P - 122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2020년 1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 학교
- 사업규모 : 관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(총61개교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관내 초중고 학생에 대한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수지 개선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	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	3회 추경 (F)
계	530,000	640,000		530,000	60,000	50,000	110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265,000	320,000		265,000	30,000	25,000	55,000	
시 비	265,000	320,000		265,000	30,000	25,000	55,0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급식 학교 및 학생 수 등 보조 수요량 증가로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학교급식법 제8조	제4항
근거내용	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·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·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질 향상
- 수입축산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도내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: 4,167,000원 * 12월 = 5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8.12~2019.01 : 추진계획수립
- 2019.01~2019.12 : 사업집행(연중 계속)
- 2019.12~2020.01 : 결과보고 및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: 625,163,140원	
2018년	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: 574,304,520원	
2019년	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: 507,442,430원 (2019.11.30.기준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691,655	625,163	60,000	6,492	
2018년	590,000	574,305	0	15,695	
2019년	590,000	507,442	0	82,558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동물위생팀장 박용준	담당자	행정9급 조왕희	전화	2893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) (P - 122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2월 ~ 2020년 12월
- 사업규모 : 5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 조성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1,195,800		195,800		1,000,000	1,195,800	
국 비								
도 비		298,950		48,950		250,000	298,950	
시 비		298,950		48,950		250,000	298,950	
기 타		597,900		97,900		500,000	597,900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가축행복농장 추가 인증(5개소)에 따른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축산법	제3조
근거내용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	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관리계획	학술용역비사전심사	정보화사업사전협의	민간위탁의회의동의	출연·출자회의의결
경상 <input type="checkbox"/>	자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 <input type="checkbox"/>	보조재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관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농가의 2019년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(2019.11.11./5개소)에 따른 보조 내시 및 부담지시로 예산 편성 필요
- 축사 환경(온도, 습도, 화재 등)관리시설 개선, 환경 개선(환경관리기, 환풍기 등) 등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으로 축산업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	민간자본사업보조 (이전재원) 402-02	사육환경개선1식*5개소*200,000,000원*50% = 50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2 : 보조사업자 사업 계획 수립 및 이월
- 2020. 1 ~ 12 : 사업실시 및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예산액 : 97,900천원 - 사업량 : 사육환경개선 1식 - 집행액 : 97,900천원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97,900	97,900	0	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축산팀장 송진현	담당자	행정7급 이재근	전화	2818
-----	------	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[구제역및시예방약품구입지원(소브루셀라병채혈지원)] (P - 12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일원
- 사업규모 : 3,600두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질병검진을 위한 소 채혈비를 채혈요원(김포시 공수의사)에 지급하여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수행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21,000	36,000	21,000		15,000	15,000	
국 비	6,300	10,800	6,300		4,500	4,500	
도 비	2,205	3,780	2,205		1,575	1,575	
시 비	12,495	21,420	12,495		8,925	8,925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김포시 결핵병 예방을 위한 일제검사비용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예방법	제15조(검사·주사·약물·목록·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) 제1항
근거내용	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□	계속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소 결핵균이 우형 결핵(M.bovis)에서 인형 결핵병(M.tuberculosis)으로 확산됨에 따른 인체감염 사전예방
-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 결핵병·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소브루셀라병 채혈지원	301-12 기타보상금	소브루셀라병,결핵병 채혈지원 : 10,000원 × 1,500두 = 15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1 : 기본계획수립
- 2019.11 : 결핵 및 브루셀라 일제채혈 검사 완료
- 2019.11~2019.12 : 사업집행(36백만원)
- 2019.12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소 브루셀라 일제검진 채혈 1,852두 예산액 14,700천원/집행액 12,964천원	
2018년	소 결핵병,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채혈(상반기) 875두 예산액 21,000천원/집행액 8,758천원	
2019년	일제검사 추진 중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14,700	11,438	0	3,262	
2018년	21,000	20,744	0	256	
2019년	36,000	0	0	36,000	하반기 일제검사 후 잔액 집행 예정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신문주	전화	5952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~12. : 예산 편성
- 2019.12 : 가축질병 발생 감염축 등 살처분 보상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AI 살처분 보상 3건	
2018년	구제역, 결핵병 및 백신접종폐사축 살처분 보상	
2019년	아프리카돼지열병, 결핵병, 백신폐사축 등 27호 보상(진행중) ※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농가 19호 50% 선지급(7,915백만원) / 성립전예산 사용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859,468	783,319	76,149	0	
2018년	4,176,148	3,932,038	0	244,110	
2019년	8,650,740	8,080,165	0	570,575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신문주	전화	5952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선제적 초소설치사업) (P - 12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월 ~ 12월
- 사업규모 : 7개소(거점초소 1개소, 선제적 초소 6개소)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5만수 이상(상시 사육규모) 산란계 농장에 선제적 초소 6개소 및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차단방역 강화
- 예산요구 현황

○ 위 치 : 김포시 전지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104,540	390,000	104,540		125,000	160,460	285,460
국 비	0	90,000	0				
도 비	31,362	117,000	31,362		37,500	48,138	85,638
시 비	73,178	273,000	73,178		87,500	112,322	199,822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증가
- 방역기간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, 소독비용 등 증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예방법	제50조
근거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, 제15조제1항 및 제3항, 제17조, 제17조의3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 및 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, 소독, 역학조사, 이동제한,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·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·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선제적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방역활동 강화로 전염병을 조기에 검색하여 확산방지
- 인건비, 소독비용 등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
- 차단방역강화 및 방역 현실화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선제적초소설치 사업	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(101-04)	· 방역요원 인건비: 3,000,000원*12명*1.5개월 = 54,000	
선제적초소설치 사업	사무관리비 (201-01)	· 초소운영비, 물품구입비 및 장비 등 임차비 = 23,460	
	재료비 (206-01)	· 소독약 및 방역용품 구입비 = 70,000	
	공공운영비 (201-02)	· 전기세, 유류비 등 초소 공공요금 = 5,000	
선제적초소설치 사업	시설비 (401-01)	· 전기 등 초소 부대시설 설치(철거)비: = 8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0~2019.11 :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추진계획수립
- 2019.11~2019.12 :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산란계 5개농가 선제적초소설치 운영 27,592천원	
2019년	산란계 6개농가초소, 거점소독시설 1개소, 이동통제초소 등 선제적초소설치 운영 291,900천원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104,540	27,592	75,000	1,948	
2019년	304,540 (이월액 포함)	291,900	0	12,64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이정희	전화	2826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ASF 긴급가축방역(성립전)) (P - 124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7월 ~ 12월
- 사업대상 : 김포시 축산농가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김포시 및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방역자금(특별교부세, 재난안전기금, 특별조정교부금) 사용으로 질병전파 예방 및 조기종식 도모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2,805,000				2,805,000	2,805,000	
특별교부세		1,080,000				1,080,000	1,080,000	
도 비		725,000				725,000	725,000	
시 비								
기 타		1,000,000				1,000,000	1,000,000	특별조정교부금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전국(9월 16일) 및 김포(9월 23일, 10월 2일)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 관련 긴급 살처분 실시 및 거점소독시설, 통제초소 등 운영을 위해 교부된 자금 성립 전 예산 사용 및 3회 추경 예산 수립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예방법	제50조 1항
근거내용	② 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등 긴급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자재의 구입
-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농가 및 도로 통제초소 운영
- 긴급방역을 위한 장비의 임차, 방역물품 구입 등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가축질병 재난관리	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· 초과근무수당 : 500,000원 × 1명 × 3월 = 1,500	
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· 초과근무수당 : 400,000원 × 1명 × 3월 = 1,200	
	201-01 사무관리비	· 각종 장비, 물품 등 = 72,300 · 초소, 매물현장 방역물품 = 15,000 · 살처분 상황 및 초소근무자 등 급양비 : = 35,000 · 상황 및 초소근무자 간식비 : = 6,000 · 살처분 현장 동원 근무자 작업복 : = 2,800 100,000원 × 28명	
	206-01 재료비	· 매물탱크 : 8,014천원×127개 = 1,017,900 · 생석회 : 4,000원 × 5,000포 = 20,000 · 방역용 생석회 구입 : 4,000원 × 5,000포 = 20,000 · 소독약품 등 : 30,000원 × 5,000kg = 150,000 · 방역용 소독약품 등 구입 : 30,000원 × 7,533kg = 226,000 · 매물지 사후관리 약취저감제(탈취제) : 100,000원 × 400통 = 40,000 · 매물지용 탈취제 구입 : 100,000원 × 500통 = 50,000 · 매물탱크 및 방역물품 등 : = 180,000	
	401-01 시설비	· 방역초소 설치 및 철거비 : 8,400천원 × 5개소 = 42,000 · 방역초소 설치 및 철거 : 7,800천원 × 10개소 = 78,000 · 방역초소용 기자재 : 1,000천원 × 4개소 = 4,000 · 매물지 및 발생농가 헨스 설치 : 10,000천원 × 3개소 = 30,000 · 매물지 헨스 : 6,000천원 × 1개소 = 6,000 · 살처분 및 사후관리 용역 : 180,575천원 × 4개소 = 722,300 · 매물지 사후관리 : 5,000천원 × 3개소 = 15,000	
	405-01 자산및물품취득비	· 방역용 소독장비 등 자산취득 : 2,000천원 × 35대 = 7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9.~12. : 성립전 예산수립 및 사업비 집행
- 2019.11.~12. : 예산 편성
- 2019.12 : 예산 추가집행
- 2019.12 : 사업결과 보고

□ 투자사업 추진계획

○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사업비 (A+B+G)	기투자 (A)	2019년 예산액				향후투자 (G)	비고
	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852,300	-	852,300				852,300	
공 정 별	설계비							
	보상비							
	공사비	852,300	-	852,300			852,300	
	감리비							
	부대비							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01~2019.02 :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성 영향검토(5,000,000원)
- 2019.03~2019.04 : 실시설계용역 (10,000,000원)
- 2019.05~2019.05 : 보상 (200,000원*2,000㎡)
- 2019.06 : 공사착공
- 2020.12 : 공사준공

□ 예산 교부내역

연번	교부처	교부예산	금액(천원)	교부일	비고
계			2,805,000		
1	경기도	경기도 재난안전기금(기금2차)	300,000	9.19	
2	행정안전부	재난안전특별교부세(재난1차)	180,000	9.25.	
3	경기도	경기도 재난안전기금(기금3차)	45,000	9.24.	
4	경기도	특별조정교부금(ASF 긴급방역 구축사업)	1,000,000	9.24.	
5	행정안전부	재난안전특별교부세(재난2차)	380,000	10.1	
6	행정안전부	재난안전특별교부세(아프리카돼지열병 수습대책비)	900,000	10.11	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성립전 예산 수립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실시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9,115,123	1,736,333	7,378,790	0	성립전 예비비 포함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신문주	전화	5952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생계안정자금 지원(성립전)) (P - 12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0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일원
- 사업대상 :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농가 전체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가축전염병 감염축 의심축 살처분 및 오염물건 폐기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도모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102,426	165,000				165,000	62,574	
기 금	71,698	115,500				115,500	43,802	성립전
도 비								
시 비	30,728	49,500				49,500	18,772	
기 타								

※ 성립 전 예산 기금 109,527,300원 수립(축산농가 긴급 생계자금 사용)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농가 살처분으로, 피해농가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자금 필요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예방법	제49조 제1항
근거내용	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(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김포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유지비용 지원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,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가축소유자(사육자)에 생계유지자금 지급
 - 전국평균가계비 6개월분에 대하여 사육규모별 차등산정
- 농가 생계 유지를 위해 국비(기금)분 성립전 예산 수립 선 지급, 잔여비용 시비분 확보 후 지급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살처분 보상금 지원	301-12 기타보상금	· 생계안정자금 : 165,000,000원 = 165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.~12. : 예산 편성
- 2019.11 : 생계안정자금 기금분(70%) 성립전예산 수립, 3개월 분 우선지급
- 2019.12 : 생계안정자금 시비분(30%) 예산확보, 잔액 지급 및 사업결과 보고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생계안정자금 10호 지급	
2019년	생계안정자금 22호 지급중(성립전)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102,426	102,426	0	0	
2019년	165,000	0	0	165,000	성립전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신문주	전화	5952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) (P - 12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1월 ~ 12월
- 사업규모 : 12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농가 내 접근 차단용 울타리 설치로 질병 발생 방지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360,000				360,000	360,000	
국 비								
도 비		90,000				90,000	90,000	
시 비		90,000				90,000	90,000	
기 타		180,000				180,000	180,000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, 김포시는 질병 발생 지역으로, 재입식 시 재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 예산 편성 및 사업 진행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예방법	제17조(소독설비 및 실시 등)
근거내용	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1. 가축사육시설 (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)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□	자본■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기존 축산농가 인허가 당시 규정되지 않던 울타리 관련 규정이 최근 수년간 가축방역기준 계속적 강화로 인하여 신규 수립되어,
- 김포 돼지농가 재입식 기준에 소독설비 및 울타리 설치 여부가 포함될 예정으로,
- 김포시 돼지 살처분 농가의 빠른 재입식복구 및 울타리 설치로 인한 야생동물 등을 통한 질병 재발생 예방 효과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고
양돈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	402-02 민간자본사업보조	· 울타리 설치지원 : 30,000,000원*12개소*50% = 18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1 : 기본계획수립
- 2019.11 : 사업 신청 접수 및 사업자 선정
- 2019.11~2019.12 : 사업집행(12개소 360백만원)
- 2019.12 : 결과보고 및 평가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신문주	전화	5952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ASF 등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사업(성립전)) (P - 126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년 11월 ~ 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전지역
- 사업규모 : 24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소요되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	924,000				924,000	924,000	
국 비		462,000				462,000	462,000	
도 비		92,400				92,400	92,400	
시 비		369,600				369,600	369,60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돼지열병 연속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예산확보 필요
- 방역기간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, 소독비용 등 증가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가축전염병예방법	제50조
근거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, 제15조제1항 및 제3항, 제17조, 제17조의3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 및 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투약, 소독, 역학조사, 이동제한,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·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·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여 방역활동 강화 필요
- 방역기간 장기화로 인한 인건비, 소독비용 등 증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ASF 등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	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(101-04)	· 방역요원 인건비 - 2,750,000원*24개소*4명*2개월 = 528,000	
	사무관리비 (201-01)	· 초소운영비, 물품구입비 및 장비 등 임차비 = 56,000	
	공공운영비 (201-02)	· 전기세, 유류비 등 초소 공공요금 = 10,000	
	재료비 (206-01)	· 소독약 및 방역용품 구입비 25,000원*500kg*24개소 = 300,000	
	시설비 (401-01)	· 전기등 초소 부대시설 설치(철거)비 = 30,0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19.10~2019.11 :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추진계획수립
- 2019.11~2019.12 :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축수산과	가축방역팀장 신철우	담당자	수의7급 이정희	전화	2826
-----	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
사업설명서

농업진흥과



(김포시 농업인의 날) (P -13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~12월 ○ 위 치 : 김포시 관내
- 사업규모 :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농업인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, 영농인 시상과 함께 풍년농사의 보람을 전 농업인과 함께 나누어 화합과 발전의 계기 마련
- 예산요구 현황 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32,000	0	35,000			-35,000	-32,000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32,000	0	35,000			-35,000	-32,000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김포시농업인의 날 행사 취소로 예산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촌진흥법	제15조
근거내용	제15조(농촌지도사업의 조정)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	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-	-	-	-	-	-	-
경상■	자본□	-	-	-	-	-	-	-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김포시 농업인의 날	201-03 행사운영비	· 제25회 김포농업인의 날 기념식 = Δ33,000	예산전액감액
	301-09 행사실비보상금	· 참가자 급식비 : 8,000원*250명 = Δ2,000	예산전액감액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 자 : 2017. 11. 08.(수) 장 소 : 김포시민회관 인 원 : 1,200여명 내 용 : 기념식(시상), 이벤트, 농축산물 판매시식·홍보 등 	
2018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 간 : 2018. 11. 09.~11. 10.(2일간) 장 소 : 한강신도시 호수공원(구래동) 인 원 : 3,000여명 내 용 : 기념식(시상), 이벤트, 농축산물 판매시식·홍보·체험 등 	
2019년	-	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취소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32,000	31,617	-	83	
2018년	32,000	31,992	-	8	
2019년	35,000	0	-	35,00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업진흥과	인재교육팀장 이재준	담당자	농촌지도사 구형진	전화	5089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	------

(도농상생 프리마켓 대전) (P - 13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~12월
- 사업규모 :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관내 도시·농촌 간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신뢰도 증진과 안전먹거리 공급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20,000	8,492	20,000			-11,508	-11,508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20,000	8,492	20,000			-11,508	-11,508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도농상생 프리마켓 행사 취소로 예산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농촌진흥법	제15조
근거내용	제15조(농촌지도사업의 조정)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-	-	-	-	-	-	-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도농상생 프리마켓 대전	201-03 행사운영비	· 도농상생프리마켓 행사 추진 및 운영 =	△9,108
	301-09 행사실비보상금	· 참가자 급식비 : 8,000원*300명 =	△2,400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8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간 : 2018. 11. 09.~11. 10.(2일간) 장소 : 한강신도시 호수공원(구래동) 인원 : 3,000여명 내용 : 기념식(시상), 이벤트, 농축산물 판매시식·홍보·체험 등(김포시농업인의 날과 병행추진) 	
2019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농상생 프리마켓 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홍보물 : 리플렛(1,000매), 포스터(300매), 초청장(300매), 초청장 봉투(300매)/3,300,000원 - 홍보영상 : 김포 도시농업한마당·도농상생 프리마켓 사전 홍보영상 2식/3,300,000원 - 현수막 제작 및 설치 : 육교 및 읍면동 등 19매/1,892,000원 	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취소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8년	20,000	20,000	-	-	
2019년	20,000	8,492	-	11,508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업진흥과	인재교육팀장 이재준	담당자	농촌지도사 구형진	전화	5089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	------

(도시농업 활성화) (P - 130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9. 1~12월
- 사업규모 : 1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도시농업의 개념과 도시민 참여 프로그램 홍보로 도시농업 활성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8년 예산액 (A)	2019년 예산액					2018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+F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3회 추경 (F)		
계	11,600	3,280	22,000	1,280		-20,000	-8,320	
국 비								
도 비								
시 비	11,600	3,280	22,000	1,280		-20,000	-8,320	
기 타	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도시농업한마당 행사 취소로 예산 감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	제5조 제1항
근거내용	제5조 (도농교류활동의 지원)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(1~6항)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회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-	-	-	-	-	-	-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비 고
도시농업 활성화	201-03 행사운영비	·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=	△18,000
	301-09 행사실비보상금	· 도시농업 한마당 급식비 =	△2,000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7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예치유교실 : 5회 167명 • 허브교실 : 6회 156명 • 농촌체험학습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: 4회 118명 • 생활원예교실 : 5회 127명 	
2018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허브전문가 양성교육 : 15회 454명 • 희망도시텃밭 주말 농사교육 : 3회 30명 • 공영도시텃밭 운영 : 1개소 •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: 1회 1,000명(11월 9~10일 예정) 	
2019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시농업협의회 추진 : 2회 •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전시공간 선반 제작/2,000,000원 	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취소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	집행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7년	565,400	11,400	-	554,000	텃밭부지 매입 불가로 불용액 발생
2018년	11,600	11,564	-	36	
2019년	23,280	2,720	-	20,560	11.30까지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농업진흥과	도시농업팀장 서이현	담당자	농촌지도사 정세영	전화	5075
-----	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	------